

발행일 : 서울특별시장 구자준
면적 : 문화정보설장 조용하
전화 75-7834

제 477 호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75-6090

1974.12.31.

시보

차례

◎조례

제 902 호	서울특별시 청소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	3
제 903 호	서울산업대학 설치 조례	4

◎고시

제 201 호	도시계획시설(유원지)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	5
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◎공고

제 73 호 (동대문구공고)	시장개설허가취소	6
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

◎사령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준 [인]
1974년 12월 31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902 호

서울특별시 청소사업비
특별회계 설치조례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청소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하며 청소비 특별회계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 생활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특별회계의 설치) 청소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비 특별회계(이하 「특별회계」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

그 세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 조(회계년도) 이 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년도의 예에 준한다.

제 4 조(세입) 이 회계의 세입은 오물수거수수료와 폐자대, 타 회계로 부터의 차입금 및 정부의 보조금 기타 사업에 부대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5 조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쓰레기 및 분뇨사업의 운영비
2. 청소장비의 매입
3. 차임금 거래등의 상환
4. 쓰레기 및 분뇨사업 관리
5. 쓰레기 및 분뇨수거처리에 관한 조사연구
6. 쓰레기 및 분뇨처리 시설의 건설
7. 기타 부대사업의 경영관리

제 6 조(부담구분) 전조 각호의 지출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충당하되 이의 부족예산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.

제 7 조(준용) 이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제 8 조(시행규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 산업 대학 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

1974년 12월 31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903 호

서울 산업 대학 설치 조례

제 1 조 (대학설치) 대학교육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와 민족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, 연구하고 아울러 수도권 개발과 시민생활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립산업대학을 설치한다.

제 2 조 (명칭 및 위치) 명칭은 서울 산업대학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이라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동동 산 8 의 3에 둔다.

제 3 조 (교직원 및 하부조직) ① 대학에 학장,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책임강사, 조교등의 고원(이하 "교원"이라 한다)을 두고, 대학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 교원의 대학운영에 필요한 사항중

학사에 관하여는 학칙에 의하고 직원의 종류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③ 학장은 대학의 고원중 교수 및 부교수와과장(課長) 및 과장(科長)의 임용 또는 재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4 조 (학장) 학장은 대학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사 및 대학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.

제 5 조 (감독) 대학의 학사업무는 교육법제 8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,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.

제 6 조 (학과설치 및 학생정원)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와 과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7 조 (학칙개정) 학칙의 제정 및 개정에 있어서 학생정원의 증감과 학과의 설치 및 폐지 기타 제정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행한다.

제 477호

시

보

1974.12.31 6-5

제 8조(부설연구기관) ①대학에 수도
개발을 위한 학술연구를 위하여 대
학의 부설기관으로 필요한 연구소를
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②전항의 연구소의 설치운영에 관하
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제 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규
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 당시의
서울산업대학은 이 조례에 의하여
설치된 것으로 본다.

고 시

1974.12.30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01호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(유원지)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조서

단위 : ㎡

시설명	면적			비고
	기정	변경	화전	
정농유원지	255,000	178,732	76,760	
우이유원지	776,863	80,000	696,863	
세검유원지	405,540	271,908	133,632	

※별첨: 도면표시와 같음. (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
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)

공 고

◎동대문구제 73 호

시장개설허가취소

시장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
과 같이 시장개설허가를 취소하였기
공고함.

1. 허가번호 : 동대문 21 호

2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
화동 268 의 5

3. 시장명 : 중화시장

4. 개설자 : 중화상공주식회사

5. 대표자 : 이 병 준

6. 취소일자 : 1974.12.30

7. 취소근거 : 시장법 제7조 2항 규정

1974.12.30.

서 울 특 별 시 장

사 령

◎ 1974.12.26

동대문구 지방행정
수도사업소 서기보 박남준
전라남도 고흥군전출을 경합.

◎ 1974.12.29

영동출장소 지방행정
서기보 박선규
지방행정서기에 추서함.

서 울 특 별 시 장